

1. 개정이유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개선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가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시 필요한 이직확인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마련하며, 고용보험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44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성별과 무관하게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안 제82조의2제2항 및 별지 제75호의6서식 신설)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다.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기준(안 제91조의2 제2항 및 제3항)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마련

라.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개선(안 제115조의3 제1항제1호가목)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에서 “폐업 직전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 적자”로 개선함.

마.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별표 3)

이원화 되어있던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 급여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신고포상금 상한액 및 연간 지급한도를 명확히 함.

바.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5호의3 서식 등)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신설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식에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3호 중 “여성으로서”를 각각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중 “해당한다)를”을 “해당한다)을”로 한다.

제82조의2제2항 본문 중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보수합산신청자의 경우 별지 제75호의6서식에 따른 보수합산신청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9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수합산신청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div 28$$

제115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을 “4개월 이상 적자가 발생한”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포상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하며 상한액과 연간 지급한도는 공모형, 비공모형에 대해 각각 별도 적용한다.

별표 3 제3호 부정행위란 제3호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같은 란 본문 중 “20”을 “30”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제2쪽 작성방법 중 직종부호란에 “987 교통사고조사원”을 각각 추가한다.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이직일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고, 작성 및 처리방법 제3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보수합산신청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 예 ☐아니오

3. 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확인란에 적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또는 별지 제75호의6서식에 따른 보수합산신청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본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별지 제75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7호서식의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신청인 서명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며, 공지사항의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청구권이 최초 발생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고용보험법」 제68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려 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9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를 포함하여 반환명령을 받게 되며,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1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전 신고된 부정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수합산신청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3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작성)				
피보험자 (이직자)	성 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주 소				
	입사일 (피보험자격 취득일)		이직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①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이직사유 구분코드 3/3쪽 참조)		구분코드	(구체적 사유, 10자 이상 기재)		
②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부터	부터	부터	부터	총합
	까지	까지	까지	까지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평균임금 산정명세					
③임금계산기간	부터	부터	부터	부터	총합
	까지	까지	까지	까지	
④임금계산기간총일수	일	일	일	일	일
⑤ 임 금 내 역	기본급	원	원	원	원
	기타수당	원	원	5원	원
	상여금(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3/12)				원
	연차수당(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 × 3/12)				원
⑥ 1일 통상임금(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원	
⑦ 1일 기준보수(해당되는 사람만 작성)				원	
⑧ 초단시간 근로일수(해당자만 작성)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날의 총 일수 (일)			
⑨ 기준기간 연장(해당자만 작성) 사유코드: 1. 질병·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출산·육아 4. 기타 사유		사유코드			
		연장기간			

※ 3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3쪽 중 2쪽)

⑩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근로일수 "o" 표시)	~					~					~					~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⑪ 보수지급기초일수	일					일					일					일				
⑩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근로일수 "o" 표시)	~					~					~					~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⑪ 보수지급기초일수	일					일					일					일				
⑫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제2항(제82조의2제4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제출)합니다.

발급일(제출일)

년 월 일

발급자(제출자)

[] 사업장명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요령

- ①란 작성법: 해당 이직자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에 적힌 상실 사유의 구분코드를 적고, 보다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반드시 10자 이상 작성합니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종고용

■ ②란 작성법

- ②란은 이직자의 이직일을 포함하여 4주 이전까지의 기간을 1주(7일) 단위로 적습니다.

* 마지막 줄에는 사업장에서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예> 12. 24. 이직자

②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 로시간	12.18.~ 12.24.	12.11.~ 12.17.	12.4.~ 12.10.	11.27.~ 12.3.

<예> 1. 31. 이직자

②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 로시간	1.25.~ 1.31.	1.18.~ 1.24.	1.11.~ 1.17.	1.4.~ 1.10.

■ ③ ~ ⑦란 작성법

- ③란은 이직자의 이직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 ④란의 첫 번째 칸에는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고, 차례로 1개월씩 지난 기간을 적되, 마지막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 월에서는 3개월을 빼고, 이직일에는 1일을 더한 날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 적습니다.

<예> 12. 24. 이직자

③ 임금계산기간	12.1.~ 12.24.	11.1.~ 11.30.	10.1.~ 10.31.	9.25.~ 9.30.
④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24일	30일	31일	6일

<예> 1. 31. 이직자

③ 임금계산기간	1.1.~ 1.31.	12.1.~ 12.31.	11.1.~ 11.30.	X
④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31일	31일	30일	X

- ⑤란에는 ③란에 적은 기간에 지급된 기본급과 기본급 외의 기타수당을 적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3개월분만 작성합니다. 다만, 12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던 이직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한 개월에 지급된 상여금에 3을 곱하고 근로한 개월을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예) 근로한 개월이 6개월인 경우: 상여금 × 3/6

- ⑥란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다만,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 ⑦란은 ③번란에 작성한 임금계산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작성하되,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 보수에 ②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 ⑧란 작성법: 이직자가 이직 당시에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였던 경우에만 적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⑨란 작성법: 기준기간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사유코드”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다만, ⑧번에 해당하는 이직자는 24개월)간 30일 이상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의 코드번호를 적고, “연장기간”란에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⑩ ~ ⑫란 작성법

- ⑩란의 가장 위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 1개월씩 지난 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 예) 12. 24. 이직자의 경우 가장 위 칸에는 12. 1. ~ 12. 24.를 적고 그 아래 칸에는 11. 1. ~ 11. 30., 10. 1.~ 10. 31.을 적되, 통산 피보험단위기간(⑫)이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습니다.(사업장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2쪽을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⑪란에는 ⑩란에 작성된 기간 중 실제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 ⑫란에는 ⑪란에 작성된 보수지급 기초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유의사항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본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생 락)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 ----- ----- -----.
1. 배우자가 없는 <u>여성으로서</u>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 한다)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 <u>사람으로서</u> ----- ----- ----- ----- ----- -----.
2. (생 락)	2. (현행과 같음)
3. 배우자가 없는 <u>여성으로서</u>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만 <u>해당한다</u>)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3. ----- <u>사람으로서</u> ----- ----- ----- ----- ----- <u>해당한다</u>)을 -----

③·④ (생략)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 ⑦ (생략)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생략)

<신설>

③·④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보수합산신청자의 경우 별지 제75호의6서식에 따른 보수합산신청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수합산신청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 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① 법 제69조의7제3 호에서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u>연속하여</u> <u>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u> 나. ~ 라. (생략) 2. ~ 4. (생략) ② (생략)	<u>산정한다.</u>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 합계 + 해당 기간 유급휴 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 ③ 제1항 및 제2항----- ----- ----- -----.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① ----- ----- ----- ----- ----- -----. 1. ----- ----- 가. ----- ----- <u>4개월 이</u> <u>상 적자가 발생한</u> -----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